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1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(2022년 12월 31일)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○ 타 법령 명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(2022.12.31.)이 도래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(2023.12.31.)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의2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함.

- 안 제13조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의 제명변경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타 법규 제목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을 더욱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1)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으로 변경

나. 타 법규 제목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3조)

1) 제13조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대상제외

라. 입법예고: 2022. 9. 15.~10. 5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 중 <u>세입세출외현금관리</u>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 ----- -----.</p>